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여성가족국)

2026. 6. 10.(수)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목 차

I . 제안경위	2
II . 개요	2
III . 검토의견	5
1. 일반회계	5
2.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의견서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경기도지사
2. 제출연월일 : 2026. 5. 29.
3. 회부연월일 : 2026. 6. 1.

II.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결산개요서 3~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B-C)
여 성 가 족 국	4,431,702,845	4,430,150,845	4,428,845,699	1,305,146
세 외 수 입	51,833,964	51,426,760	50,121,614	1,305,146
보 조 금	3,767,789,499	3,767,709,499	3,767,709,49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079,382	611,014,586	611,014,586	-
여 성 정 책 과	22,233,327	22,208,728	22,197,193	11,535
세 외 수 입	1,886,240	1,891,263	1,879,728	11,535
보 조 금	19,946,284	14,946,284	14,946,284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00,803	5,371,181	5,371,181	-
가 족 정 책 과	364,370,705	364,476,759	364,005,767	470,992
세 외 수 입	6,469,898	6,575,951	6,104,959	470,992
보 조 금	357,890,862	357,890,862	357,890,862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45	9,946	9,946	-
보 육 정 책 과	3,194,860,873	3,196,160,608	3,195,781,487	379,121
세 외 수 입	22,029,166	23,328,901	22,949,780	379,121
보 조 금	2,580,902,869	2,580,902,869	2,580,902,86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1,928,838	591,928,838	591,928,838	-
아 동 돌 봄 과	833,013,276	830,057,988	829,616,108	441,880
세 외 수 입	20,842,545	19,002,432	18,560,552	441,880
보 조 금	797,725,685	797,645,685	797,645,68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445,046	13,409,871	13,409,871	-
고 용 평 등 과	17,101,932	17,101,950	17,100,454	1,496
세 외 수 입	534,663	534,681	533,185	1,496
보 조 금	16,272,519	16,272,519	16,272,51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4,750	294,750	294,750	-
여 성 비 전 센 터	122,732	144,812	144,690	122
세 외 수 입	71,452	93,532	93,410	-
보 조 금	51,280	51,280	51,280	-
보정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

나. 세출 결산

※ 결산개요서 8~10쪽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여성가족국	5,612,232,111	5,608,245,385	2,000,000	1,986,726	99.9%
여성정책과	44,558,058	44,387,106	-	170,952	99.6%
가족정책과	419,165,903	418,899,540	-	266,363	99.9%
보육정책과	4,068,443,416	4,065,569,121	2,000,000	874,295	99.8%
아동돌봄과	1,048,617,082	1,048,000,699	-	616,383	99.9%
고용평등과	30,396,735	30,389,342	-	7,393	99.9%
여성비전센터	1,050,917	999,577	-	51,340	95.1%

○ 주요 불용사업 내역(30% 이상 또는 1억 이상 불용 사업)

- 13개 사업 1,132,801천원 불용 ※ 결산개요서 11~12쪽

○ 예산의 변경(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 결산개요서 13쪽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1건 11,200천원
- 예산의 변경 : 2건 73,336천원
-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 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건 2,000,000천원 ※ 결산개요서 14쪽

○ 예비비 결산 : 해당없음

○ 성인지 결산

※ 결산서 첨부서류[2] 753~894쪽

- 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개)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여 성 가 족 국	67	1,135,712,282	1,134,977,287	734,995	99.9%
여성정책과	17	21,742,718	21,613,765	128,953	99.4%
가족정책과	15	269,032,122	269,031,416	706	100%
보육정책과	8	43,963,618	43,524,700	411,918	99.1%
아동돌봄과	11	773,947,470	773,763,562	183,908	99.9%
고용평등과	13	26,821,493	26,816,513	4,980	99.9%
여성비전센터	3	231,861	227,331	4,530	98.0%

-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개)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여	성 가 족 국	67	1,135,712,282	1,134,977,287	734,995	99.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60	383,745,058	383,179,744	734,995	99.9%
	여성정책과	17	21,742,718	21,613,765	128,953	99.4%
	가족정책과	13	267,848,865	267,848,359	506	100%
	보육정책과	6	20,851,534	20,590,528	261,006	98.7%
	아동돌봄과	9	46,424,375	46,254,626	169,749	99.6%
	고용평등과	13	26,821,493	26,816,513	4,980	100%
	여성비전센터	2	56,073	55,953	120	99.8%
성별영향사업	소 계	2	1,183,257	1,183,057	200	100%
	가족정책과	2	1,183,257	1,183,057	200	100%
자치단체업	소 계	3	23,260,872	23,105,550	155,322	99.3%
	보육정책과	2	23,085,084	22,934,172	150,912	99.3%
	여성비전센터	1	175,788	171,378	4,410	97.5%
기타사업	소 계	2	727,523,095	727,508,936	14,159	100%
	아동돌봄과	2	727,523,095	727,508,936	14,159	100%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B-C)
여 성 가 족 국	4,431,702,845	4,430,150,845	4,428,845,699	1,305,146
세 외 수 입	51,833,964	51,426,760	50,121,614	1,305,146
국 고 보 조 금	3,767,789,499	3,767,709,499	3,767,709,499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079,382	611,014,586	611,014,586	0

○ (세입총괄) 2025년도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317억 284만원 이고, 실제 징수결정된 4조 4,301억 5,084만원 가운데 4조 4,288억 4,569만원이 수납되고, 13억514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수납 : 24년) 4,332백만원 → 25년) 1,305백만원

《미수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과목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여 성 가 족 국		1,305,146	
여 성 정 책 과	기타이자수입	109	시군 집행잔액 납부 지연 (26.2월 수납완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1,193	시군 집행잔액 납부 지연 (26.5월 수납완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33	납기 미도래 (26.2월 수납완료)
가 족 정 책 과	기타이자수입	7,927	시군 납부 지연 (26.5월 6,571천원 일부수납완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63,065	시군 집행잔액 납부지연, 과년도 추기반납건 발생 (26.5월 458,358천원 일부수납완료)
보 육 정 책 과	기타이자수입	4,398	시군 이자 납부 지연 (26.5월 1,197천원 일부납부완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74,722	시군 집행잔액 납부 지연 (26.5월 14,782천원 일부 수납완료)
	지난년도수입	1	시군 집행잔액 등 납부지연
아 동 돌 봄 과	기타이자수입	8,296	국비도비 보좌업 시군 미반납 등(26.5월 5,389천원 일부수납완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59,188	국비도비 보좌업 시군 미반납 등(26.5월 120,091천원 일부수납완료)
	지난년도 수입	△25,604	징수결정액 대비 초과 수납 (26년1월 조치완료)
고 용 평 등 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496	의정부시 반납예산 착오 편성으로 연도내 미수납 (26.3월 수납완료)
여 성 비 전 센 터	기타사용료	50	대관료 납부 지연 (26.3월 수납완료)
	그외수입	72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지연 (26.3월 수납완료)

- (시도비반환금 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미수납항목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만 13억96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가족정책과 소관 4억6,306만원, 보육정책과 소관 3억 7,472만원, 아동돌봄과 소관 4억 5,918만원이 체납된 것임.
- 미수납 사유는 시군에서 도비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는 것으로 道가 시도비반환금수입을 주요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반납이 지연되면 자금의 적시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 여성가족국은 시군에서 도비반납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결산

2025 회계연도 결산 비교 : 道 일반회계 VS 여성가족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C)	불용액 [D=A-B-C]	불용률
道 일반회계	39,286,755,913	38,713,407,992	98.5%	399,177,575	174,170,346	0.4%
여성가족국	5,612,232	5,608,245	99.9%	2,000	1,986	0.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여성가족국	5,612,232,111	5,608,245,385	2,000,000	1,986,726	99.9%
여성정책과	44,558,058	44,387,106	0	170,952	99.6%
가족정책과	419,165,903	418,899,540	0	266,363	99.9%
보육정책과	4,068,443,416	4,065,569,121	2,000,000	874,295	99.9%
아동돌봄과	1,048,617,082	1,048,000,699	0	616,383	99.9%
고용평등과	30,396,735	30,389,342	0	7,393	99.9%
여성비전센터	1,050,917	999,577	0	51,340	95.1%

- (세출총괄) 2025년도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5조 6,122억 3,211만원이고, 이 중 5조 6,082억 4,538만원을 지출(99.9%)하고, 19억 8,672만원이 불용(0.1%)되어, 예산집행률은 道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게 나타남.
- (불용규모 축소필요)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예산교부 후 실집행액(사업추진 주체) 기준 불용액 30%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1개 사업에서 44억 4,22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4년 미집행 사업비 496억 123만원 보다 감소하였음.

《30%이상 또는 1억 이상 불용사업 내역(실집행액 기준)》

※ 전액 불용 사업 제외(별도 작성)

(단위: 천원)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여성가족국 직접 작성)
여성가족국 소계		11개	59,258,493	58,233,156	54,816,255	4,442,238	
여성정책과		3개	342,023	227,344	169,601	172,422	
11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자체 /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명절휴가비) 지원	26개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8,723	198,110	140,367	148,356	시비 자체지원 및 소요액 변동 등에 따른 시군의 실소요 변경 요청과 종사자 퇴사에 따른 불용액 발생
11쪽	여성가족정책 추진 (자체 / 직 접) - 여성분야 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사무관리비)	35,000	17,006	17,006	17,994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 및 일부 안건에 따른 검토 등 발생
11쪽	여성가족정책 추진 (자체 / 직 접) - 양성평등 업무추진	경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300	12,228	12,228	6,072	회대면에 의견 · 간담회 등 · 업무추진 · 관련 · 등 · 소액 · 발생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여성가족국 직접 작성)
가족정책과		1개	1,100,000	893,250	812,204	287,796	
11쪽	경기 가사 지원 서비스(자체/지원)	9개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000	893,250	812,204	287,796	유사사업 기추진 등 사유로 신규사업 시군 참여 저조, 가구당 이용횟수를 전부 소진하지 않은 가구로 인한 잔액 발생
보육정책과		4개	33,397,440	32,847,512	31,259,823	2,137,617	
11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전환) (자체/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1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003,872	21,878,718	21,108,029	895,843	지정취소(34개소)에 따른 집행 잔액
11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지원 (전환)(자체/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1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63,568	1,652,919	1,560,132	303,436	지정취소(34개소)에 따른 집행 잔액
11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지원)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29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330,000	9,215,875	8,501,662	828,338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1쪽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자체/지원) -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1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100,000	90,000	110,000	공용노동 등 부 공모사업결과액 도비 지원 불용 발생
아동돌봄과		3개					
11쪽	아동돌봄지원 활성화 (자체/직접) - 아동정책 관련 회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경기도 (사무관리비)	20,630	8,295	8,295	12,335	민간인 참여 회의 및 간담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2쪽	가족돌봄수당 지원 모니터링 통신요금 (자체/직접) - 가족돌봄수당 지원 모니터링 통신요금	경기도 (공공운영비)	3,900	2,549	2,549	1,351	개통기간 지연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25. 2. 20 개통)
12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1개 시군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4,394,500	24,254,206	22,563,783	1,830,717	기관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집행 잔액

-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 편성되므로 일부 불용(여건변화 등)은 불가피하나 44억원의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불용액 축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30%이상 또는 1억이상 불용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道 30% : 시군 70%이므로, 사업비가 과다 산출될 경우 도 재정뿐 아니라 시군의 매칭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됨. 이는 시군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실제 사업 수요와 괴리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총괄 집행률에 안주하기보다 사업별 실집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 등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별 수요, 지정취소·종사자 변동 등 집행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시군과의 사전 협의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반복적·대규모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 ①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가운데 명절휴가비로 편성된 2억8,872만원의 예산 중 1억4,835만원(실집행률 48.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부는 이에 대해 시비 자체지원 및 소요액 변동 등에 따른 시군의 실소요 변경 요청과 종사자 퇴사에 따른 불용액 발생 등으로 불용사유를 제출하였음.
 - 명절휴가비는 종사자 처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인 만큼 시군별 지원 방식과 인력 변동에 따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에는 시설별 종사자 현황과 시군 자체지원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가족정책과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는 11억원의 예산 중 2억8,77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실집행률 73.8%) 이는 유사사업 기추진 등 사유로 시군 참여 저조, 가구당 이용횟수 미소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집행부는 예산 수립 이후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해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본인부담금 지원 등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차례 조정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상당한 불용이 발생한 것은 기존 유사사업과의 관계, 시군별 수요, 실제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줌. 향후에는 시군 의견수렴을 보다 조기에 실시하고, 이용 실적과 미소진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 규모와 지원 방식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보육정책과 소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2억원의 예산 중 1억1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실집행률 45%)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결과 도비 지원 금액의 불용이 발생되었음

- 특히 본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불용은 당초 편성액과 실제 지원수요 간 괴리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 추진 일정, 선정 가능성, 도비 매칭 필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모 결과 확정 후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 감액 등 세출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전액 불용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전액 불용 사업 현황(실집행액 기준)》

(단위: 천원)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여성가족국 직접 작성)
아동돌봄과		2개	217,320	0	0	217,320	
11쪽	아동보호전담 요원 지원 (균특/직접) (아동보호전담 요원 지원)	경기도 (기타직보수)	137,320	0	0	137,320	기준인건비 미반영에 따른 인력 미채용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여성가족국 직접 작성)
12쪽	경기도 입양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자체/직접) (경기도 입양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관미선정 (민간위탁금)	80,000	0	0	80,000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 ①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은 광역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하여 道 아동돌봄과로 배치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미반영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음.
- 본 사업은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전액불용 되었음에도, 금년도에 다시 1억4,256만원이 편성된 사업임.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 사유의 반복 불용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함. 집행부는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한 정부 협의 경과와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 감액 또는 대체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② 아동돌봄과 소관 경기도 입양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5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 등 필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었음
- 이후 올해 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으나 입양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정책적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집행부는 관계부서 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 사업 재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변경 타당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사용·이체 ※ 이용, 이체 없음.

- 예산은 사전 추계방식에 의해 편성·집행되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은 불가피하고, 이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변경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25년도에는 3개 사업에서 8,453만원이 변경되어 집행됨.

① 전용 : 1건 11백만원 ②변경사용 : 5건 73백만원

○ (전용)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건 11,200천원이 전용되었음.

《전용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A)	전용액(B)		전용후 예산(A±B)	전용일자 / 내용
				감액	증액		
1건			60,600	11,200	11,200	60,600	
여성정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자체/직접)	사무관리비	0	0	11,200	11,20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별세(25.5.11.)에 따른 흉상제작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자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60,600	△11,200	0	49,400	* 예산담당관-11721(2025.6.30.)호

- ① 여성정책과 소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 2025년 5월 11일 피해자 별세에 따라 당초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흉상 제작 및 기념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의 별세 시기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기리며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당초 사업 목적이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념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은 사업 성격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용의 필요성·규모·집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향후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추모·기념사업 추진 기준과 예산 활용 범위를 사전에 정비하여 예산 운용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변경사용)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제도로 2개사업에서 7,333만원이 변경 사용 되었음.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변경금액(B)		변경후 예산 (A±B)	변경사용일 / 변경사유
				감액	증액		
2건			24,780,693	△73,336	73,336	24,780,693	
가족 정책 과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자체/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5,000	△3,000	0	72,000	시군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원활한 도비보조금 교부를 위해 예산과목 정정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0	0	3,000	3,000	
보육 정책 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자체/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261,000	△70,336	0	24,190,664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량증가(일수)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 일부를 동일한 세부사업 내 부기 간 변경 사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4,693	0	70,336	515,029	

- ① 가족정책과 소관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1인가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원활한 도비보조금 교부를 위해 300만원의 사업비를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임.
- 현금성 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통계목 조정이 필요한 측면은 이해되나, 2024년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300만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어 반복적 통계목 변경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유형과 집행방식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향후에는 시군 제안사업의 성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현금성 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적정 통계목으로 편성하고, 동일 사유의 반복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②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량 증가(일수)에 따라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 일부인 7,033만원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 부기 간 변경 사용함
- 다만 처우개선비 예산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변경 사용한 것은 당초 편성된 처우개선 목적의 재원이 일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와 집행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향후에는 대체인력 수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사업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비와 대체인력 지원 간 재원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이월액 (A-B)	이월사유
보	육	2,000,000	0	0	2,000,000	
1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개선사업 (자체/지원)	2,000,000	0	0	2,000,000	○ 집행시기 미도래 - 사업기간 : '25.11월 ~ '26.5월 - 사업대상 : 287개소 - 이월사유 : 도 직접 공모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 - 예산편성 : '25년 2회 추경 - 집행계획 : 도 공모('25.12월) 사업비 교부('26년 1월) 사업수행(2~5월)

- 동 사업은 도내 150개소의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2회(9월) 추경 편성되었으나, 도 직접 공모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인 20억원이 이월된 사업임.
- '26년 5월 현재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환경개선 공사 및 정산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리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업의 추경 편성 시에는 공모 사업의 행정소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결산) 2025년 성인지 예산은 67개 사업 1조 1,357억 1,228만원을 편성하여 99.9%인 1조 1,349억 7,728만원이 집행되었음.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으로 편성해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회계법 제18조에 의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토록 명시하고 있음

《성인지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A-B)	집행률(A/B)
일반회계(여성가족국)		67개	1,135,712,282	1,134,977,287	734,995	99.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0	383,745,058	383,179,744	565,314	99.9%
	성별영향평가사업	2	1,183,257	1,183,057	200	100%
	자치단체특화사업	3	23,260,872	23,105,550	155,322	99.3%
	기타사업	2	727,523,095	727,508,936	14,159	100%

- 집행률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대비(56개 목표사업, 11개 미달성) 여전히 전체 67개 목표 사업 중 13개가 미달성으로 평가된 바 미달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임.

《성인지 결산 중 미달 사업 현황(13개 사업)》

부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여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인원	25명	17명	미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대상	382명	357명	미달
가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수혜 인원 수	452명	430명	미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설치운영 개소 수	45개소	43개소	미달

보 정 책 육 과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2.0%	30.7%	미달
	시군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 지도사 배치	놀이지도사 배치 인원수	46명	45명	미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2.0%	30.7%	미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수	1,639개소	1,612개소	미달
아 동 보 姆 동 과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수급률	97.0%	96.5%	미달
고 평 등 용 과	여성노동자복지 센터 운영지원	상담자수	3,330명	3,150명	미달
	새일센터 지정 운영 (균특/지원)	새일센터 취창업 인원수	32,888명	32,185명	미달
	새일센터 지정 운영 (균특/직접)	새일센터 취창업 인원	3,662명	3,407명	미달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수료자 중 취·창업 인원	430명	394명	미달

2.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의견서 ※ 주민의견서 28쪽, 55~61쪽

-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 8개 사업 5억2,333만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 견을 제출하였음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5년도 최종예산	주민의견	비고
1	여성정책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자 체 / 직 접)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단년도 사업이나 주기적 교육 확대 및 지속 추진이 필요함 ○ 실무 활용 여부에 대한 후속조사와 교육자료 보완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가 요구됨 	
2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 충 지 원 (자 체 / 지 원) - 가정폭력피해자 가 족 보 호 시 설 확 충 지 원 (주민참여예산)	50,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전문가 인력 보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안설비 구축을 제안함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이 피해자 삶 안정화 위한 기반시설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길 기대함 	
3	가족정책과	부 부 특 성 화 지 원 사 업 (주민참여예산) (자 체 / 지 원)	5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률 98%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었고 위기 가정 및 이혼 숙려 대상자 지원이 적절히 반영됨 ○ 다만, 18개 시군만 추진한 점은 아쉬우며, 전 시군 확대 및 가족센터 연계·홍보 강화가 필요함 	
4	가족정책과	경기도 1인가구 기 회 밥 상 (주민참여예산) (자 체 / 직 접)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1인가구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은 자립·관계 형성·건강한 식생활 향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상 연령 확대를 통해 고립감 해소 효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5	가족정책과	가족상담비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체/지원)	34,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방문 어려운 맞벌이 부부 및 다문화 가정 대상 야간·주말 상담창구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한 점은 긍정적임 ○ 만족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아동돌봄과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체/직접)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즈존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광고 범위는 도민 전체 인식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자막 크기, 표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갈등 완화 프로그램 등의 병행이 필요함
7	아동돌봄과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 돌봄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체/지원)	114,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검사 관련 보호시설 방문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 ○ 심리검사를 위해 심리기관 방문 시 픽업서비스 및 인근 기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8	여성비전 센터	여성역사 탐방로 조성 (주민참여예산) (자체/직접)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 인물 재조명 및 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하며 문화관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 ○ 지속적인 콘텐츠 보완과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효과가 확대되길 기대함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음. 이번 결산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됨.